

예산총칙

제1조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110,179,032	213,305,371
일반회계		5,836,575,817	175,097,275
특별회계		1,273,603,215	38,208,096
공기업특별회계		287,994,525	8,639,836
① 상수도사업		137,332,120	4,119,964
② 하수도사업		150,662,405	4,519,872
기타특별회계		985,608,690	29,568,261
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28,981,897	12,869,457
② 수질개선특별회계		2,556,934	76,708
③ 풍영정천유지용수공급사업특별회계		304,727	9,142
④ 하남3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1,105,396	33,162
⑤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100,921	3,028
⑥ 교통사업특별회계		31,235,544	937,066
⑦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424,700	132,741
⑧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23,720,851	711,626
⑨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5,411,939	162,358
⑩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52,859,610	1,585,788
⑪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45,627,670	7,368,830
⑫ 소방특별회계		189,278,501	5,678,355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 없음”

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6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48,595,796천원, 내부유보금은 2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4,000,000천원으로 한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지방채상환(원리금 등), 재해대책 및 복구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